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02
----------	------

발의연월일 : 2024. 11. 4.

발의자 : 김상욱 · 강대식 · 이인선

진종오 · 김선교 · 박준태

박덕흠 · 강승규 · 장동혁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한 부실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

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및 소각량 톤당 1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 또는 소

각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 략) <p><u><신 설></u></p>	<p>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u></p> <p><u>시설에 반입 · 처리하는 폐</u></p> <p><u>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p> <p><u>하는 것(이하 “폐기물”이</u></p> <p><u>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p>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 략) <p><u><신 설></u></p>	<p>제143조(납세의무자) -----</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u></p>

	<p><u>및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u></p> <p>3. (생 략)</p> <p>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⑤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144조(납세지) ----- ----- -----. 1. (현행과 같음)</p> <p>2. -----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소재지</u></p> <p>3. (현행과 같음)</p>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p> <p><u>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및 소각량 톤당 1만원</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